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 근거 마련〉

■ 이재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56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8
1. LPG 배관망 구축사업 개요	8
2.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폐업·사업전환 지원사업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재관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4. 12. 30.
3. 회부연월일 : 2024.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1987년부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LNG)를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부터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 지역에 마을 단위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이는 서민연료라 불리는 LP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책이나, 기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던 사업자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중·소규모 판매사업자는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업전환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또는 사업전환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2(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폐업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또는 사업전환의 지원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최근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2024년의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2020년 대비 133만 가구가 증가하였으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2020년 대비 42만 가구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연도별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수요가구 현황]

(단위: 가구)

구분	2020년 (A)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B)	B-A
도시가스	20,125,278	20,521,328	20,880,078	21,142,505	21,452,000	1,326,722
액화석유가스	3,750,337	3,780,189	3,693,680	3,444,253	3,330,000	△420,337

주: '24년 수요가구 수('25.4월 확정) : 최근 5개년('19~'23) 연평균 증감율로 추정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통계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 지역에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통해 액화석유가스를 도시가스 방식으로 공급하는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¹⁾.

이에 따라 기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1) LPG 배관망 구축사업 개요는 참고자료 1 참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통계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는 2020년 4,550개소에서 2024년 4,405개로 145개소가 감소하였음.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현황]

(단위: 개소)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증가율
4,550	4,511	4,489	4,461	4,405	△0.8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통계

이에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원활한 폐업과 사업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폐업지원 및 사업전환 지원의 근거는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²⁾.

2)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폐업·사업전환 지원사업은 참고자료 2 참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 입법례]

「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 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정보제공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판로(販路)·기술 및 진출업종 등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22조(컨설팅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25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① (생략)

② 정부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고용조정,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 2.(생략)

제26조(유휴설비의 유통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과정 등에서 생기는 유휴설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5. (생략)

둘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특정 사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을 규정할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 다른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들도 지방자치단체에 폐업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폐업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전환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체계에 이미 마련되어 있어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다는 점, ② 기존 법에 따른 지원체계와 별도로 특정 업종의 민간사업자만을 지원하는 것은 타 경쟁연료 업종(등유, 휘발유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³⁾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발생, 타 업종 사업

자와의 형평성 문제, 중소기업 판매사업자의 폐업 유발 등 제도 악용 가능성 등의 사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64

3) 경기도 양평군, 충청남도 청양군

※ 참고자료

1. LPG 배관망 구축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 방식의 가스공급 체계 구축 추진
 - * 도시가스 수준의 저렴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 마련
- '14년부터 마을단위(소규모)를 시작으로 '16년 군단위(대규모) 사업('16~'21)을 추진하였고, '24년부터 읍·면단위(중규모, '24~'28) 사업을 추진 중
 - * (유형) 군단위(대규모, 1,000~8,000세대), 읍·면단위(중규모, 150~1,000세대), 마을단위(소규모, 150세대 이하)

2) 사업 추진현황

① 군단위(대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16~'21년)

- * (총사업비) 3,085억원[국비 1,542 (50%), 지방비 1,234 (40%), 사용자 308 (10%)]
(사업내용) LPG저장탱크, 地中배관망 및 세대별 가스보일러 등 사용자 시설 설치 지원
-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13개군(1,000~8,000세대)에 구축 완료 후 안전 관리 등 가스공급 체계 관리 및 개선

② 마을단위(소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14년~)

- * (사업내용) 국비 50%, 지방비 40%, 사용자 10% 부담/ LPG소형저장탱크, 地中배관망, 세대별 가스보일러 등 사용자 시설 설치 지원
- '14년 시작으로 '24년까지 농어촌 363개(150세대 미만)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지원, 향후 추가 수요 발굴 및 사업 확산 기반 마련

③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24~'28년)

- * (사업내용) 국비 50%, 지방비 40%, 사용자 10% 부담/ LPG소형저장탱크, 地中배관망, 세대별 가스보일러 등 사용자 시설 설치 지원
- '24~'28년간 4차에 걸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70여개 읍·면지역에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폐업·사업전환 지원사업

□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중기부_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관련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5년 예산) 2,450억원
- (지원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내용) 위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신속·안전한 폐업 후 지속가능한 재취업과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
 - ①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 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지원' 패키지를 통한 안정적이고 신속한 폐업지원
 - ② 특화 취업지원 : 폐업(예정)소상공인의 맞춤형 취업교육 및 수당지급, 심리회복·치유 프로그램, 지역별 취업 네트워킹 활성화 등
 - ③ 재기사업화 지원 : 일반 재창업교육, 재창업사업화(재기진단+교육+밀착 멘토링+자금(최대2천만원)) 지원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전환, 재창업 지원 (중기부_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관련규정)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25년 예산) 5,500억원
- (지원대상) 사업재편 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폐업 후 예비재창업자 등
- (지원내용)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전환(추가), 재창업을 추진하는 경우 융자 등 정책자금 지원
 - ① 사업전환자금 : 3,500억원
 - ② 재창업자금 : 2,000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